**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
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가이드라인**
(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정경쟁관리팀 17.11.27)

**□ 지원자격**
○ 의료기기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(제6조 제1항)
① 규약 제9조 제2항 제2호의 **발표자(포스터 또는 e-포스터구두 발표자포함), 좌장, 토론자**는 학술대회 주최자측에서 선정한 보건의료인을 말하며, 이들에 대한 지원은 실비정산으로 한다. 단, **발표자의 경우 주저자 및 그 외 공동저자 1인만 지원**할 수 있으나, **포스터(e-포스터 포함) 발표자 경우에는 초록의 주저자 또는 공동저자 중에서 발표에 참가하는 1인만 지원**할 수 있다.

**○ 초록제출시** **초록채택메일(캡처본, 본인명의, 발표일정 및 시간 확인).** 만약 **공동저자일 경우, 주저자와 공동저자 명의가 확인되는 자료**와 학회에서 발행한 프로그램북을 첨부, 제출부탁드립니다.

**□ 지원항목**
○ 의료기기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(제6조 제5항)
⑤ 규약 제9조 제2항 제2호의 실비상당의 교통비, 등록비, 식대, 숙박비는 다음 각 호와같으며, 금액기준은 'VAT포함‘을 원칙으로 한다(이기준에서 동일 적용).

**○ 교통비 :**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참가의 경우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**이코노미클래스 국제항공 왕복운임**으로 귀국일자 확정 요금을 적용한다.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참가의 경우 교통비는 정산 시 여정이 적힌 내역서, 영수증, 보딩패스로 증빙되는 목적지까지의 이코노미 클래스 국내항공료, KTX, 고속버스 또는 이에 준하는 대중교통수단 운임으로 한다.

 **\*\* 별도의 차액지불없이 마일리지 업그레이드할 경우, 마일리지 업그레이드 증빙을 첨부, 제출**

**※ 관련 내부규정**
- **카드영수증 제출시 본인명의와 카드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카드앞면 사본을 첨부, 제출**부탁드립니다.
- **항공일정(일자, 목적지), 좌석등급을 알 수 있는 보딩패스는 반드시 제출**해야하며, 보딩패스 제출이 어려운 경우, 출입국 확인내역과 이 티켓을 제출해야 합니다. 또는 항공사 발행 탑승확인서, 마일리지적립 확인서 / 여권사본 및 출국확인 도장이 찍힌 여권사본을 제출부탁드립니다.
- **항공권은 이코노미만 지원가능합니다. (프리미엄 이코노미 지원불가)**
- 항공비용의 경우, **여행사의 인보이스, 이티켓만으로는 정산불가합니다.**
- **해외 다른지역 경유시, 자필사인이 담긴 사유서와 함께** 항공료 결제시 최단거리요금(이코노미)이 함께 기재된 인보이스를 첨부, 제출해야만 해당금액으로 정산 가능합니다. **최단거리요금 증빙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, 임의 삭감됩니다.**
- 해외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이용한 국내교통비 지원불가(공항버스,택시, 항공)
- 공항-호텔간/ 호텔-행사장소간 교통비를 지원가능하며, 이용시간및 출발지 도착지가 명기된 영수증을 제출해야합니다.
- 렌터카 비용은 지원 가능 (단, 기타 교통비용 없을 경우) 최대 15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.

**○ 등록비 :** 사전등록이 원칙이며, 비용으로 송금한 날짜 기준환율을 적용한 한화 금액 또는 신용카드 청구영수증의 금액을 적용한다.

**※ 관련 내부규정**
- **카드영수증 제출시 본인명의와 카드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카드앞면사본을 첨부, 제출**부탁드립니다.
- **등록 확인증, 개인 카드영수증, 송금확인서 제출** 부탁드립니다.
- 등록비에 포함된 식비는 식비로 지원가능합니다.
- **현장등록의 경우, 사전등록비와 자필 사인이 담긴 사유서를 제출**해야하며, 미 제출시 정산불가하며, 제출시 사전등록비만 정산가능합니다

**○ 식대 :** 학술대회 숙박기간 동안에 1일 3식 지원으로 식사시간대에 현지식당에서 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재한 영수증을 1식 1장 최대10만원, 1일 총 15만원이내로 지원한다. 단, 현금결제 시 사유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.

**※ 관련 내부규정**
- 카드영수증 제출시 본인명의와 카드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카드앞면 사본을 첨부, 제출부탁드립니다.
- **영수증은 1식1장만 정산**되며, 1식 2장 이상일 경우, 가장 큰 비용만 정산됩니다.
- 06~12시 (아침) / 12시~18시(점심) / 18시~ 다음날 06시(저녁) 정산 됩니다.
예시) 14시 110달러(점심) / 16시 100달러(저녁) 식비 제출시 점심 110달러만 정산됩니다.
- 식비는 1식당 10만원, 1일 최대 15만원까지 지원가능하며, **학회 전날 점심부터 학회 종료 다음날 점심까지 지원 가능합니다.**

- 편의점, 슈퍼마켓, 카페, 음료 등의 기타 영수증은 지급불가 합니다.
- 영수증 없이 카드승인내역만 제출 할 경우 지원불가

**○ 숙박비 :** 국내의 경우 1박당 20만원, **해외의 경우 1박당 35만원 이내에서 지원**하며, 필요시 학술대회 **개최 1일전 숙박부터 학술대회 종료일**까지의 숙박을 지원할 수 있다. 단, 숙박비에 미니바, 영화,세탁, 전화 등 숙박에 부수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.

**※ 관련 내부규정**
- **카드영수증 제출시 본인명의와 카드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카드앞면사본을 첨부, 제출**부탁드립니다.
**- 학술대회가 개최되는 국가, 도시가 다른 곳에서의 숙박 지원불가**
- 숙박바우처에 식비가 기재된 경우(아침, 점심, 저녁 구분 가능시) 식비항목으로 정산가능합니다.
- 숙박비는 학술대회 하루 전부터 종료일까지 지원가능합니다.
예시) 학술대회 기간이 수-금요일인 경우, 체크인-화 / 체크아웃- 토까지 지원가능합니다.
- Early check –in / Late check –out Charge 지원불가

○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참가의 경우 현지 교통비는 공항-호텔간왕복 교통비 및 학술대회 참석을 위한 숙소-행사장간의 교통비(1일 왕복1회 한정)로 학술대회 기간내 1인 최대 15만원까지로서, 이용시간, 출발지 및 도착지가 명기된 영수증으로 증빙되는 경우에 한 한다.

**※ 기타 내부규정**
- **모든 결제는 개인명의 카드 / 현금(영수증, 사유서 포함)만 지원가능하며, 타인명의 결제시 가족인 경우만 정산가능(가족관계증명서 제출)**